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986호 2025년 11월 24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49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0호) 7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1호) 12
-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영덕군)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2호) 16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4호) 17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5호) 18

■ 공 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74호) 22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0호) 24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1호) 25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6호) 71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240호) 75
- 경주 문산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241호) 91
-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5-263호) 101
- 경산 도시관리계획(양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150호) 107
-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양군 고시 제2025-98호) 109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25-195호) 112

■ 공 고

-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하수도)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5-2534호) 11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65호) 121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66호) 122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0호) 123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1호) 124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2호) 125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3호) 126

■ 공 고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구미소방서 공고 경북(구미) 제2025-1호) 128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49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1. 24.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지방하천 (석천)	교 량 신 설	〈백화교〉 L=140.0m, B=10.5m (영구 2,392㎡) (일시 1,825㎡)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695번지 외 3필지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8.7.31.
당초 변경	지방하천 (석천)	교 량 개 체	〈무명교〉 L=118.0m, B=7.5m (영구 2,539㎡) (일시 1,450㎡)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643-1번지 외 6필지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8.7.31.

※ 계획홍수위 변경에 따른 형하고(여유고)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변경 추가지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054-778-38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내역서

시군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18필지		1,351,413	2,580				
포항계				2필지		39,805	2,173				
포항	남	대송	대각	산53	임야	11,107	2,08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길379번길 18	장윤식 (장현조의 증손자)	사방시설 보완	10차 잔액, flis:601㎡
포항	남	대송	남성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09-1, 세영타워니치 1702호	박 옥 경	사방시설 보완 (잔액)	10차 잔액, 이희섭-공시송달, flis:86㎡
포항	남	대송	남성	산6-3	임야	28,698	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14동 11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이 회 섭	사방시설 보완 (잔액)	10차
경주계				9필지		1,260,917	268				
경주			하	산136	임야	3,967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107동 103(좌동, 해운대대림아파트)	황유남	사방댐 설치	3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하 산137-1
경주			하	산227	구거	1,422	22		국도 교통부	사방댐 설치	3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하 산137-1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경주			하					경상북도 경주시 보불로 356 (하동)	정금화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하 산137-1 3차
경주			하	392	답	555	1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29번길 25, 303동 1101호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	김경림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하 산137-1 3차
경주			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74, 202동 512호 (안강우방타운)	김수지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하 산137-1 3차
경주			황용	산49	임야	1,157,554	5		경주시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황용 산49 3차
경주			황용	산241	구거	1,223	24		국도 교통부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황용 산49 3차
경주			황용	840	구거	2,872	20		농림수산 식품부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주 황용 산49 3차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644	임야	43,636	1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20 주공아파트 130-901호	남윤세	사방댐 설치	계획변경추가지정 3차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78	임야	19,438	73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암길 33-11	곽복자	계류보전	잔액, 계획변경추가 지정 4차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708	구거	30,250	98		국도 교통부	계류보전	잔액, 계획변경추가 지정 4차

소 계 지					지 목	지 적 (㎡)	지 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경산계				4필지		34,010	78					
경산		남산	흥정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107-12	신현기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군진로 14 신경빌라5동 301호	이원근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경기도 광주시 상대길 101-12, 4동 301호(신현동, 풍경타운)	이원숙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산2	임야	13,488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 세곡푸르지오 210동 904호	이원태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흥정길 4	이원준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30, 109동 905호 (월성동,월성보성타운)	이원호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산16	임야	16,264	4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91, 208동 202호 (신매동, 시지향라타운)	권민서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시군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경산		남산	흥정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52, 602동 107호 (인창동, 아름마을일신 건영아파트)	이승용	사방댐 설치	6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산3	임야	1,190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88길 55(수성구4가)	정용환	사방댐 설치	6차 추가지정
경산		남산	흥정	700	전	3,068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88길 55(수성구4가)	정용환	사방댐 설치	6차 추가지정
울진계						16,681	61				
울진		북	덕구	산43	임야	13,388	38	주소불명	김본명규	사방댐 설치	3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공시송달
울진		북	덕구	859-1	구거	3,068	22		농림축산 식품부	사방댐 설치	3차 계획변경추가지정
울진		북	덕구	865	담	225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 20, 103동 302호 (당진 엠코타운)	김진열	사방댐 설치	3차 계획변경추가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1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2025년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054-778-38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서

시 군	사 업 소 재 지 내 역								사방지 현황(㎡)				사업종류	해제사유	비고
	구	읍 면	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계				21필지		1,281,591	4,217	434	3,783						
포항계				3필지		2,661	89	22	67						
포항	북	죽장	현내	222	진	364	83	20	63	2025-08-25(324)	산지사방	사업계획 변경			
포항	북	죽장	현내	223	진	952	3	1	2	2025-08-25(324)	산지사방	사업계획 변경			
포항	북	죽장	현내	224	진	1,345	3	1	2	2025-08-25(324)	산지사방	사업계획 변경			
경주계				12필지		1,228,674	2,785	288	2,497						
경주			하	산136	임야	3,967	131	12	119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하 산137-1		
경주			하	산137-1	임야	8,231	61	9	52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하 산137-1		
경주			하	산227	구거	1,422	516	11	505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하 산137-1		
경주			하	391	담	694	28	10	18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하 산137-1		

사 업 소 재 지 내 역										사방지 현황(㎡)					사업종류	해제사유	비고
시 군	구	읍 면	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경주			하	392	답	555	84	24	60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하 산137-1				
경주			황용	산49	임야	1,157,554	10	1	9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황용 산49				
경주			황용	산241	구거	1,223	131	34	97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황용 산49				
경주			황용	840	구거	2,872	242	8	234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주 황용 산49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78	임야	19,438	206	46	160	2025-07-03(249)	계류보전	사업계획 변경	간액, 경주 문무대왕 용동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708	구거	30,250	1,214	82	1,132	2025-07-03(249)	계류보전	사업계획 변경	간액, 경주 문무대왕 용동				
경주			문무대왕 용동	산710	도로	1,513	133	29	104	2025-07-03(249)	계류보전	사업계획 변경	간액, 경주 문무대왕 용동				
경주			문무대왕 용동	173-1	답	955	29	22	7	2025-07-03(249)	계류보전	사업계획 변경	간액, 경주 문무대왕 용동				
경산계				2필지		23,989	618	97	521								
경산			흥정	산16	임야	16,264	600	79	521	2025-08-25(324)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산			흥정	702	도로	7,725	18	18	-	2025-08-25(324)	사방램설치	면적제외					

사 업 소 재 지 내 역										사방지 현황(㎡)				사업종류	해제사유	비고
시 군	구	읍 면	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울진	계			3필지		20,317	584	23	561							
울진		북	덕구	산43	임야	13,388	92	3	89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울진		북	덕구	859-1	구거	3,068	487	18	469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울진		북	덕구	866	진	3,861	5	2	3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울릉	계			1필지		5,950	141	4	137							
울릉		울릉	사동	산103	도로	5,950	141	4	137	2025-06-05(206)	사방램설치		사업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2호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 (영덕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라 영덕군 사업구역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단위 : 대)

사업구역	택시면허대수	확정총량대수	초과대수
영덕군	66	19	47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4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24.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1	지방하천 (한천)	교 량 재가설	〈우탐교〉 L=42.0m, B=6.0m (영구 341㎡) (일시 3,603㎡)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탐리 446-1번지 일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2	지방하천 (한천)	교 량 재가설	〈탐2교〉 L=42.0m, B=5.0m (영구 278㎡) (일시 2,097㎡)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탐리 356-3번지 일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경상북도 고시 제2025-455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정지정내역서

시군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사업종류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총계			9		657,468	648					
김천계			2		424,345	312					
김천	남	월명	산7	임야	413,962	198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1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	계류보전	대표지번	
김천	남	월명	산123	구거	10,383	114		국(농림축산식품부)	계류보전		
고령계			5		174,378	183					
고령	덕곡	옥계	산62	임야	14,281	14	고령군 덕곡면 예동 414	이창수	계류보전	대표지번	
							서울 성북구 석관동 110-2 중앙하이츠아파트 1-404	이진인			
고령	덕곡	옥계	산215	구거	11,210	5		국(국토교통부)	계류보전		
고령	덕곡	옥계	산32-5	임야	43,345	1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주식회사상생증권	계류보전		

시군	소재지			지목	진체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사업종류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주소			
고령	덕곡	옥계	산63	임야	694	9	고령군 덕곡면 옥계동 278	배백수	계류보전		
고령	덕곡	옥계	579	하천	104,848	144		국(국토교통부)	계류보전		
칠곡			2		58,745	153					
칠곡	동명	기성	산17-2	임야	34,116	105	대구광역시 동구 신창동 507-3	최태홍	사방램	대표지번	
칠곡	동명	기성	1092-1	구거	24,629	48		국(농림축산식품부)	사방램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7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선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최선규)	토목공사업 (150797) 건축공사업 (15062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 1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등록말소 (2025. 12. 1.)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2.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명 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 본 금	주영업소 소재지
주식회사 필그림하우스 (조재학)	2025.11.20.	경북250003	310,000천원	경북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20-7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1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4.5.17.)으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전 및 전승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및 용어 변경(‘무형문화재’→‘무형유산’, ‘전수교육조교’ → ‘전승교육사’) 등에 따른 조문 일괄 정비

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 제19호 서식)

3. 개정 규칙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련법령: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유산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6 / Fax : 054-880-3179

· 이메일: sukida@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로,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를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 · 군수”를

“시장·군수”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 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요청 할수”를 “요청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 문화재 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을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최소되거”를 “취소되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무형 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으로, “제38조”를 “조례 제38조”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에 위원회의 심의 를”을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로,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결정 하여야”를 “결정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를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로 한다.

제9조의 제목“(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기준)”을“(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 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전수교육조교의 추천)”을“(전승교육사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 실”을 “사실”로 한다.

제13조 중 “도무형 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별지 서식 제9호”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무형유산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도무형유산과”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를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도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보 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로, “서식 공개행사계획서”를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로, “서식 공개 행사 결과보고서”를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경 우”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를 “(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로 한다.

제21조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자”를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칭	한 글	한 자
보유자 (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개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군의 의견)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요약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붙임 서식의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시장·군수의 검토 자료)
2. 상기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단체)의 인적사항, 주요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종목의 유래, 특징 및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 기술
 - 나. 신청자(단체)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 다. 신청자(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 라. 신청자(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 마. 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각 4부를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1. 학술조사 개요

-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
- 조사단 구성 및 역할

2. 해당 무형유산의 주요내용

가) 종목의 개요	나) 종목의 실연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_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

가) 전승가치

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학술성

-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내용미·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 무형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추천 받는 사람	① 명 칭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주 소			
	⑤ 담 당 분 야			
	⑥ 도 무 형 유 산 전수활동 경력			
경 력	⑦ 기 능 · 예 능 공 개 실 적	○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⑧ 이 수 사 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 그 밖의 사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4.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의 전승교육사 (장학생)로서 무형유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성실히 받아 경상북도 무형유산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80g/n²) 또는 중질지(80g/n²)]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제 호

경상북도 무형유산 [] 보유자 인정서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제 호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관 리 번 호:

보 유 단 체 명:

소 재 지:

위 단체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도 명	무 형 유 산	제 호 (명칭)			
전 승 자 구 분	[] 보유자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주 소	(전화번호:)		

재 교 부 사 유 도난 분실 훼손 그 밖의 사유

도 난 · 분 실 · 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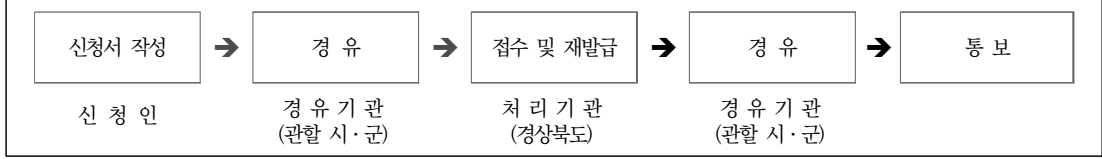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첨부물	사진(3.5cm × 4.5cm)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8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도무형유산 명칭	제 호(명칭)	보유자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도무형유산 명칭	제 호(명칭)	보유자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경 력	⑤도 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	보유자 성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⑥무 형 유 산 관 계 분 야 전 수 경 력	기능·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p>「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인 [인]</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피추천인 사진(3.5cm × 4.5cm) 1장</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이수 기능·예능:)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주체:

주 소:

위 사람은 경상북도 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 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	----

도 무 형 유 산 명 명	제 호(명칭:)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input type="checkbox"/> 도난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

도 난 · 분 실 · 훼손 등 의 사 유	
---------------------------	--

그 밖 의 사 항	
-----------	--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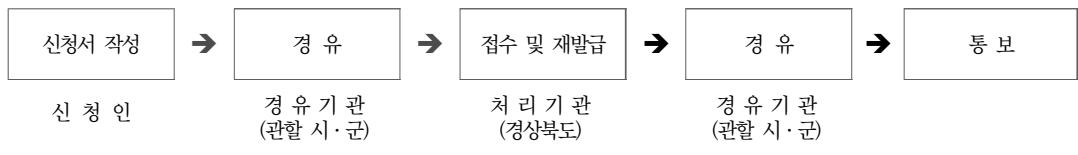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도 무 형 유 산 명 칭	제 호(명칭:)		
전 수 교 육 주 체		심사대상자	
심 사 일 시	년 월 일	심 사 장 소	
심사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 공개행사계획서

관리번호	무형유산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 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위와 같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지 방 비	경상북도	
	시·군비	
	그 밖의 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무형유산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도 비	시·군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람인원	명					

위와 같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16호 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무형유산 종목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도무형유산 명 칭	제 호(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 능 · 예 능	
	전 수 교 육	
	전 승 자	
	전 수 교 육 경 비	
	전 승 활 동	
	전 수 교 육 시 설 현 황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	--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세부 점검 내용

<p>기능·예능 현황</p>	
<p>전수교육 현황</p>	
<p>전승자 현황</p>	
<p>전수교육 경비</p>	
<p>전승활동 현황</p>	
<p>전수교육 시설 현황</p>	
<p>그 밖의 사항</p>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제 호

무형유산 조사원 신분증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경상북도지사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무형유산 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9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도무형유산 명칭	제 호(명칭:)
----------	-----------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	--------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 성명,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 1. 변경 증빙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u>규칙</u>은 「<u>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u>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u>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이하“<u>조례</u>”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u>시행계획</u>”이라 한다)</u>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u>시장 · 군수</u>는 해당 시 · 군에 <u>조례 제19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u>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u></p>	<p><u>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규칙</u>은 「<u>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u>」-----</p> <p>-----.</p> <p>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u>이하 “도지사”라 한다</u>)는 「<u>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u>조례</u>”----- <u>도무형유산 -</u>----- <u>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u>-----</p> <p>-----.</p> <p>② (<u>현행과 같음</u>)</p> <p>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u>시장 · 군수</u>-----</p> <p>----- <u>무형유산으로</u> -----</p> <p>-- <u>무형유산이</u>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u>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u>(이하 “<u>도무형문화재등</u>”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1. <u>도무형문화재 등의 명칭</u></p> <p>2. (생 략)</p>	<p>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 <u>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u> <u>(이하 “도무형유산등”</u>----- ----- ----- -----.</p> <p>1. <u>도무형유산등</u>-----</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2조 따라 <u>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과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u>(이하 “<u>보유자등</u>”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u>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u>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도무형 문화재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u>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 <u>도무형유산등</u> <u>의 지정과 도무형유산</u>----- ----- <u>전승교육사</u>----- ----- ----- ----- <u>무형</u> <u>유산에</u> ----- <u>요청할 수</u> ----.</p> <p>② ----- ----- ----- ----- <u>도무형유산등</u>----- ----- -----.</p>

현 행	개 정 안
<p>1. <u>도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u>전승교육조교</u>의 <u>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u>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u>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u>)</p> <p>2. (생 략)</p> <p>제9조(<u>도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인정기준)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보유자: <u>무형문화재</u>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p> <p>2. 보유단체: <u>무형문화재</u>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p> <p>가. 해당 <u>문화재</u>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p> <p>나. 해당 <u>문화재</u>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p> <p>다. 해당 <u>문화재</u>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p>	<p>1. <u>도무형유산</u>----- -- <u>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u>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9조(<u>도무형유산</u>의 보유자등 인정기준) - ----- <u>무형유산</u>----- ----- -----.</p> <p>1. ----- <u>무형유산</u>----- ----- -----</p> <p>2. ----- <u>무형유산</u>----- ----- -----</p> <p>가. -- <u>무형유산</u>----- ----- -----</p> <p>나. -- <u>무형유산</u>----- -----</p> <p>다. -- <u>무형유산</u>이 ----- ----- ----- -----</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0조(<u>전수교육조교의 추천</u>)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u>전수교육조교</u>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조사 등 조사결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렵거나 <u>전수교육조교</u>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u>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u>)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u>전수교육조교</u>의 인정서: 별지 제4호 서식</p> <p>2.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12조(<u>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u>)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u>전수교육조교</u>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p>	<p>제9조의2(<u>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u>) 조례 제25조에 따라 <u>명예보유자</u>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u>전승교육사의 추천</u>)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승교육사</u>----- -----. ----- ----- <u>전승교육사</u>----- -----.</p> <p>제11조(<u>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u>) ① ----- -----.</p> <p>1. ----- <u>전승교육사</u>-----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u>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u>) ① ----- ----- ----- <u>전승교육사</u>----- ----- -----.</p>

현 행	개 정 안
<p>②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u>사 실</u>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 ----- ----- <u>사실</u>----- -----.</p>
<p>제13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u>도무형 문화재</u>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u>별지 서식 제9호</u>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 <u>도무형유산</u>----- ----- ----- <u>별지 제 9호 서식</u>----- -----.</p>
<p>제14조(전수장학생 추천절차 등)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u>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전수장학생 추천절차 등) ① ---- ----- <u>도무형유산</u>----- ----- -----.</p>
<p>② <u>무형문화재</u>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u>무형문화재</u>의 <u>기능</u>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p>	<p>② <u>도무형유산</u> ----- -----.</p> <p>1. <u>도무형유산</u>의 보유자 ----- ----- <u>무형유산</u>의 <u>기능</u> ----- -----</p>

현 행	개 정 안
<p>2. <u>무형문화재와</u>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u>무형문화재의</u>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p> <p>③ <u>무형문화재</u>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조례 제31조제1항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u>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u>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17조(<u>도무형문화재의 공개</u>)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u>도무형문화재</u>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능·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 <u>공개행사계획서</u>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 <u>공개행사 결과보고서</u>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u>도무형유산과</u> ----- ----- <u>무형유산의</u> ----- ---</p> <p>③ <u>도무형유산</u> ----- ----- . ----- ----- .</p> <p>제1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 <u>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u>도무형유산의 공개</u>) ----- ----- <u>도무형유산 보유자</u> ----- ----- ----- <u>서식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u>----- ----- ----- --- <u>서식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도지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u>도무형문화재 대장</u> 및 <u>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u>(이하 “<u>무형문화재 대장</u>”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도무형문화재등</u>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p> <p>② <u>무형문화재 대장</u>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무형유산 대장) ① ----- ----- <u>도무형유산</u> ----- -- <u>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u>(이하 “<u>무형유산</u>” ----- -----, ----- <u>도무형유산등</u>----- -----.</p> <p>② <u>무형유산</u> ----- ----- <u>경우</u>----- -----.</p>
<p>제20조(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생 략)</p>	<p>제20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현행과 같음)</p>
<p>제21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36조에 따른 <u>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u>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p>	<p>제21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 ----- <u>도무형유산의 전승자</u> ----- -----.</p>

관련법령발취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5. 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3., 2024. 5. 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1. 3., 2024. 5.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 6. 25., 2024. 5. 7.>

경상북도 공고 제2025-228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덕송건설 주식회사 (황상진)	토목건축 공사업 (03-014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36-1, 더채움 1층 1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 제3호
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정진섭)	건축공사업 (16-0759)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3-9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주식회사 종가종합건설 (김상우)	건축공사업 (16-0994)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2길 19, 1층			
주식회사 기용종합건설 (오기욱)	건축공사업 (16-0970)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10, 가동 1층 101호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 14:00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부속 회의실)

나.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청 지역개발과 박상영

다.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라. 구비서류

-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4)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

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5-240호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1. 24.

경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및 도로)사업

나. 명 칭 :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A = 42,086㎡

가. 자동차정류장 : A = 42,035㎡,

나. 도 로 : A = 51㎡(L = 25m, B = 2.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경주시장

나.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일로부터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별첨 조서 참조(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변경사유 : 안강읍 산대리 2280-338번지의 분할 및 용도폐지에 따른 지번 및 소유자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지역	소계	42,107	-	42,107	100.0	
	생산녹지지역	-	증) 72	72	0.2	
	자연녹지지역	42,107	감) 72	42,035	99.8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72	100% 이하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에 따른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환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42,107	감) 72	42,035	경주시 고시 제71호 (22.04.21.)	

■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동차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정류장 면적 축소 - A = 42,107㎡ → A = 42,035㎡(감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토지이용현황(건축허가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류장(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면적 축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35)에 관련도서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당초)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자동차정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43필지		42,035	42,035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004	답	30	3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7	묘	565	56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0	묘	799	799	박태림					
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1	답	2,747	2,74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2	목	1,025	1,025	이병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				
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4	천	79	79	김두문	월성군 안강읍 안강리 ***				
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5	천	93	9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6	답	439	43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7	답	76	76	장남규	월성군 안강읍 산대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9	답	1,164	1,16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0	답	1,464	1,464	이미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3/7
						이은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2/7
						이대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2/7
1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5	묘	112	112	이원술				
1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53-3	답	447	44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56-4	답	945	94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5-7	전	825	825	김옥란	경산시 사정동 *** 삼산아파트 ***동 ***호			
1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6-2	전	135	13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3	답	138	13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4	전	276	27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5	답	1,587	1,587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9-2	답	22	2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2-1	답	1,879	1,879	경주군 안강읍 산대리 ****				
2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8-2	답	2,315	2,315	월성군 안강읍 산대리 ****				
2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8-3	답	2,615	2,615	포항시 두호동 **				
2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0-1	구	30	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1-1	답	1,012	1,012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동 ****호 (안강우방타운)				
2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1-2	임	63	6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 안강우방타운 ****-****				
2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2-1	전	3,098	3,098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금성길 **	안강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산대지점)		근저당권
2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2-2	답	443	443	손양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3-1	답	3,078	3,078	이병호	월성군 안강읍 산대리 ***	주소					
3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3-2	임	76	76	이병호	경주군 안강읍 산대리 ***	주소					
3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4-3	답	598	59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주소					
3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6-6	답	3,053	3,05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주소					
3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9-2	답	262	26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주소					
3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2-1	답	13	13	정승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 안강우방타운 ****동 ****호	주소					
3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3-3	전	1,251	1,251	정승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동 ****호 (안강우방타운)	주소	경주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54 (노서동)(안강지점)		근저당권	
3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9-1	묘	116	116	정승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 안강우방타운 ****동 ****호	주소					
3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0-2	진	1,402	1,402	이병호	월성군 안강읍 산대리 ***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1-2	답	4,457	4,457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금성길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산대지점)	안강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산대지점)	근저당권
3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2-1	묘	489	489	이기혁				
4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3-2	전	392	39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4-1	전	228	228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 ***동 ***호 (서변동, 화성리버파크2단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산대지점)	안강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0(산대지점)	근저당권
4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 -338	친	2,109	2,109	황재광				
4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344-1	도	88	88	국(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필지		51	51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6-5	답	51	5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자동차정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3필지		42,035	42,035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004	답	30	3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7	묘	565	56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0	묘	799	799	경주시					
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1	답	2,747	2,74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2	목	1,025	1,02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4	천	79	7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5	천	93	9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6	답	439	43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7	답	76	7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9	답	1,164	1,16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0	답	1,464	1,46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7
1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5	묘	112	11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53-3	답	447	44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56-4	답	945	94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5-7	전	825	82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6-2	전	135	13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3	답	138	13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4	전	276	27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8-5	답	1,587	1,58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79-2	답	22	2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2-1	답	1,879	1,879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8-2	답	2,315	2,315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88-3	답	2,615	2,615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0-1	구	30	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2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1-1	답	1,012	1,01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1-2	임	63	63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2-1	전	3,098	3,098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2-2	답	443	443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2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3-1	답	3,078	3,078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3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3-2	임	76	76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4-3	답	598	59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6-6	답	3,053	3,05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9-2	답	262	26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2-1	답	13	1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3-3	전	1,251	1,25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09-1	묘	116	11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0-2	전	1,402	1,40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1-2	답	4,457	4,45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2-1	묘	489	48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3-2	전	392	39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14-1	전	228	22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38	천	956	956	건설부					
4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0	천	46	46	(국)기획 재정부					
44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1	천	145	145	건설부					
4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2	천	484	484	(국)기획 재정부					
46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3	천	4	4	(국)기획 재정부					2280-338 에서 활용
47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4	천	4	4	(국)기획 재정부					
48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5	천	7	7	(국)기획 재정부					
49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6	천	12	12	(국)기획 재정부					
5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7	천	3	3	(국)기획 재정부					
5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8	천	426	426	(국)기획 재정부					
52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349	천	22	22	건설부					
53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344-1	도	88	88	(국)기획 재정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합 계	1필지		51	51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96-5	담	51	5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고시 제2025-241호

경주 문산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일원의 경주 문산3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문산3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일원

다. 면 적 : 227,60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울산지역과 연계한 비철금속, 자동차 관련업종의 공업용지 집단화 및 전략적, 체계

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지역 및 외동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성호개발 대표이사 최영완 외 5개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5

※ 공동사업시행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비 고
(주)성호개발	대표이사 최영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5	대표 사업시행자
(주)성호금속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영천시 연하공단2길 25(신기동)	
(주)성호금속 경주2공장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2길 70	
(주)성호기업	대표이사 배기성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74-51	
(주)성호정공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5	
(주)성호철강	대표이사 나지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99-31, 2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22년 ~ 2025년 12월 31일

변경 - 2022년 ~ 2029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중분류	업종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CODE	업 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144,275	100.0	
C24	1차 금속 제조업	137,000	95.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75	5.0	

다.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계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7,607	-	227,607	100.0	
일반공업지역	219,448	-	219,448	96.4	
자연녹지지역	8,159	-	8,159	3.6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227,607	100.0	
산업시설용지	144,275	63.4	
1차 금속 제조업(C24)	137,000	6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7,275	3.2	
지원시설용지	6,105	2.7	
지 원 시 설	6,000	2.6	
가 압 장	105	0.1	
공공시설용지	77,227	33.9	
도 로	33,292	14.6	8.0% 이상
주 차 장	3,250	1.4	0.6% 이상
녹 지	19,700	8.6	5.0 ~ 7.5% 이내
공 원	9,045	4.0	
저 류 시 설	11,405	5.1	
배 수 지	535	0.2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027	33,292	1	702	13,565	3	1,100	16,987	1	225	2,740
중로	4	1,325	19,727	-	-	-	3	1,100	16,987	1	225	2,740
소로	1	702	13,565	1	702	13,565	-	-	-	-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5개 노선					2,027						
소계	4개 노선					1,325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618	석계리 산180-59번지	문산리 산82-11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56	석계리 산180-58번지 일원	문산리 산82-11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226	문산리 산83번지	문산리 산82-29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25	석계리 산180-59번지 일원	문산리 산82-29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소계	1개 노선					702						
기정	소로	1	1	11	국지 도로	702	문산리 산82-29번지	문산리 산83번지 일원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법면 포함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3,250	-	3,250		
기정	1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910	-	9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1,105	-	1,10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노외주차장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1,235	-	1,23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19,700	-	19,700		
기정	1	녹지1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733	-	733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녹지2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2,454	-	2,454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녹지3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1,120	-	1,12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4	녹지4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82-11번지	536	-	536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5	녹지5	완충 녹지	외동읍 석계리 산176-12번지	2,475	-	2,47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6	녹지6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7,594	-	7,594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7	녹지7	완충 녹지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4,788	-	4,788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나)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9,045	-	9,045		
기정	1	공원1	소공원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1,655	-	1,65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공원2	소공원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2,110	-	2,1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공원3	소공원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5,280	-	5,28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지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535	-	53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11,405	-	11,405		
기정	1	저류시설1	우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6,705	-	6,70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저류시설2	우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2,910	-	2,9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저류시설3	우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11번지 일원	1,790	-	1,79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라. 용도지역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도로망계획도 (계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우수공급계획

구 분	우수 수요량(m ³ /일)			비 고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계	610.3	65.8	544.5	
산업시설용지	604.3	59.8	544.5	
지원시설용지	6.0	6.0	-	

※ 우수공급 : 문산3 일반산업단지가 입지 하고자 하는 경주시 외동읍 우수관련은 기존 상수도관D100mm에서 산업단지 송수관로(D50mm)를 이용하여 배수지까지 연결 후 산업단지 내 상수관로(D80mm)로 각 시설별로 공급계획

※ 공업용수 : 본 산업단지는 폐수발생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없으므로, 우수의 사용량은 생활용수 65.8m³/일만 사용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지하수 유입량	합 계	비 고
계	353.2	4.5	35.9	393.6	
오수 발생량	44.7	4.5	5.0	54.2	
폐수 발생량	308.5	-	30.9	339.4	

※ 단지 내 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오수관로(D300mm, L=2,583.0m) 및 압송관로(D100mm, L=95.0m)를 통하여 문산2일반산업단지 기존오수관로(D300mm)로 연계처리할 계획

※ 산업시설에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기에 별도의 폐수처리계획은 없음

다.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합 계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발생량(톤/년)	18,311.8	17,643.8	595.8	72.2

※ 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규정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함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비 고
계	24,528	18,308	
산업시설용지	24,117	17,938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411	3701	

※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 수요량(회선)	비 고
계	211	
산업시설용	144	
지원시설용	18	
기타 공공시설 및 여유량	49	

※ 통신시설은 산업단지 외곽의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에 공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계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 계재생략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054-779-62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계재생략)

안동시 고시 제2025-263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내 풍산읍 노리 산119-1(1150번지)번지 일원 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안동시 고시 제2025-182(2025. 8. 7.)호로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된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원 안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성(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안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농수산물 종합유통 센터	풍산읍 노리 산119-1번지 일원	141,834.3	증) 247.9	142,082.2	2012.10.18 (안고 제116호)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안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시장) 면적 변경 A = 141,834.3㎡ → 142,082.2㎡ (증 2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 면적 조정사항을 반영한 지번 및 면적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3.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1) 기 정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19-1번지 일원

2) 변 경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50번지 일원

※ 지적 확정측량 및 임야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 2) 명 칭 :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다. 변경 사유

- 1) 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대지면적 변경(구역계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 1) 시설결정 면적 : $141,834.3\text{m}^2 \rightarrow 142,082.2\text{m}^2$ 증) 247.9m^2
- 2) 사업시행 면적 : $39,024.7\text{m}^2 \rightarrow 39,272.6\text{m}^2$ 증) 247.9m^2
- 3) 공사현황

■ 기정

가. 토 공 - 흙깎기(토사)- $173,122\text{m}^3$, 흙깎기(풍화암)- $323,843\text{m}^3$

터파기- $13,674\text{m}^3$, 되메우기- $9,762\text{m}^3$, 비다짐성토- $2,810\text{m}^3$

나. 배수공 - 원형맨홀(D900)-5EA, 원형맨홀(D1200)-4EA

각형맨홀(1.4×1.2)-8EA, 우수관(D450~800) L=526m

집수정(0.5×0.5)-18EA, 집수정(0.8×0.8)-9EA

빗물받이(0.4×0.3)-26EA, 연결관(D200~300)-414m

플룸관(0.4×0.4)-832m, U형개거(0.5×0.5)-356m

도수로-61m

다. 포장공 - 아스콘포장(T=400mm)- $10,330\text{m}^2$

투수콘포장(T=400mm)- $3,885\text{m}^2$

보도블럭 포장(T=200mm)- 510㎡

보차도 경계석(200×250×1,000)- 939m

라. 부대공 - 법면보호공(자연생태복원)- 9,283㎡

Soil Nailing(L=5m): 1,542공

돌쌓기(H=1.5m)- 15㎡

메시웬스(H=2.0, W=2.0m)-20m

마. 옹벽공 - 보강토옹벽(H=0.8~5.5m)-1,506㎡

바. 식재공 - 굴참나무-102주, 이팝나무-53주, 스트로브잣나무-693주

사. 건축공 - 지상1층 4,542.54㎡(경매장, 선별장, 출하장, 5t출하장, 집배송 시설, 소포장시설, 도매점포, 저온저장고, 출하쉘터, 공용공간, 기계실, 방재실, 창고, 방풍실, 계단실, 화장실, 쓰레기집합소, 복도, EPS/TPS), 지상2층 1,140.17㎡(사무실, 직원휴게실, 숙직실, 구내식당, 매점, 공용공간, 복도, 계단실, 화장실, 창고, EPS/TPS)

■ 변경

가. 토 공 - 변경없음(생략)

나. 배수공 - 변경없음(생략)

다. 포장공 - 변경없음(생략)

라. 부대공 - 변경없음(생략)

마. 옹벽공 - 변경없음(생략)

바. 식재공 - 변경없음(생략)

사. 건축공 - 건축물 대지면적 변경(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30,822.7㎡ → 31,070.6㎡ 증) 247.9㎡(해당사항 외 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안동시장
- 2)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바.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5.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기 정(중전 편입필지)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필지5		39,024.7	39,024.7			
1	풍산	노	801-3	공	752.7	752.7	공유지	안동시	
2	풍산	노	산119-1	임	23,394.0	23,394.0	공유지	안동시	
3	풍산	노	산120	임	14,728.0	14,728.0	공유지	안동시	
4	풍산	노	산268	구	18.0	18.0	공유지	안동시	
5	풍산	노	산269	구	132.0	132.0	국유지	국토교통부	

- 변 경(확정 편입필지)

순번	토지소제지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필지3		39,272.6	39,272.6			증) 247.9m ²
1	풍산	노	1150	대	29,077.6	29,077.6	공유지	안동시	
2	풍산	노	1151	공	1,993.0	1,993.0	공유지	안동시	
3	풍산	노	1152	임	8,202.0	8,202.0	공유지	안동시	

4.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5. 관계도서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T.054-840-6342) 및 농촌경제진흥과
(T.054-84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5-15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양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양기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3	양기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산6번지 일원	-	증)7,131.0	7,131.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3	양기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A = 7,131.0m ²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공원 결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고시 제2025-98호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 명 칭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 면적 : 170,633㎡
- 변경 사유 : 발전기 기초 및 전기실 크기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 변경 내용
 - 1) 발전기 기초 변경 D=20.8m → 23.0m(증 2.2m), H=4.6m → 3.4m(감 1.2m)
 - 2) 전기실 크기 변경 A=720㎡ → 760㎡(증 4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주)에이더블유피 대표 김 수 연
- 주 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3층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변(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29년 12월 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물건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 계					22,865,809	170,633		
1	영양	무창	산1	임	9,774,568	95,322	국(산림청)	
2	영양	무창	산1-53	임	365	147	국(산림청)	
3	영양	무창	산1-43	임	1,218,200	10,868	국(산림청)	
4	영양	기산	산11-1	임	4,360,534	25,701	국(산림청)	
5	영양	기산	산11-7	임	144	67	국(산림청)	
6	영양	기산	산6-1	임	1,564,458	11,154	국(산림청)	
7	영양	기산	산6-3	임	4,959	374	영양군	
8	영양	무학	산12	임	1,342,185	19,819	국(산림청)	
9	수비	송하	산76	임	4,600,396	7,181	국(산림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 이해관계인은 영양군 지역개발과(☎054-680-634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고시 제2025-195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4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실효)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군계획시설의 정비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북삼 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5개 노선					1,499					
기정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663	어로리 752 (소로 2-82)	어로리 743-210 (소로 2-82)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683	어로리 752 (소로 2-82)	어로리 743-210 (대로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045	울리 798-22 (소로 1-13)	인평리 971-18 (소로 1-13)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80	울리 798-22 (소로 1-13)	울리 798-37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434	울리 830-271 (소로 2-14)	울리 355-1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폐지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23	울리 830-241 (소로 1-21)	울리 830-162 (소로 2-86)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폐지	소로	1	51	10	국지 도로	186	울리 830-258 (소로1-21)	울리 346-9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753	어로리 56-2 (소로 1-19)	어로리 743-232 (소로 1-19)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2	8	국지 도로	239	어로리 743-217	어로리 743-232 (소로 1-1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3	8	국지 도로	319	울리 830-72 (소로 1-19)	보손리 823-115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3	8	국지 도로	240	울리 830-72 (소로 1-19)	인평리 1008-16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91	울리 767-60 (소로 1-13)	울리 776-5 (소로 1-20)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기정	소로	2	85	8	국지 도로	175	인평리 971-24 (소로 1-13)	인평리 960-2 (소로 1-20)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5	8	국지 도로	157	인평리 971-24 (소로 1-13)	인평리 970-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86	8	국지 도로	247	울리 830-149 (소로 1-21)	울리 830-212 (소로 1-22)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9호선	소로1-19호선	• 노선 연장 - L = 663 → 683m (증 20m)	장기미집행시설 소로2-82호선 실효에 따른 도로 연결을 위한 노선 연장
소로1-20호선	소로1-20호선	• 노선 축소 - L = 1,045 → 180m (감 865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1-21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434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22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123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51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186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82호선	소로2-82호선	• 노선 축소 - L = 753 → 239m (감 514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3호선	소로2-83호선	• 노선 축소 - L = 319 → 240m (감 79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4호선	-	• 노선 폐지 - B = 8m, L = 191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85호선	소로2-85호선	• 노선 축소 - L = 175 → 157m (감 18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6호선	-	• 노선 폐지 - B = 8m, L = 247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3. 실효일자(효력발생일) : 2025년 11월 21일

※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4.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5-2534호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안동시 윤희동 261-5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

-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부지 활용사업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 가로망의 연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안)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9	6~12	국지 도로	163	운흥동 271-14	운흥동 261-5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0	6	국지 도로	189	운흥동 276-3	운흥동 259-22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1	4.5~5.5	국지 도로	118	운흥동 254-5	운흥동 261-1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2	6~8	국지 도로	327	운흥동 261-5	안흥동 364-18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3-29	·노선신설 - B = 6~12m - L = 163m	·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	소로3-340	·노선신설 - B = 6m - L = 189m	·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	소로3-341	·노선신설 - B = 4.5~5.5m - L = 118m	· 국유지인 현황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노선 신설
-	소로3-342	·노선신설 - B = 6~8m - L = 327m	·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나.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공하수도 (운홍빗물펌프장)	안흥동 364-12 일원	2,553	감) 332	2,221	2014.1.9. (안고제2014-1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운홍빗물 펌프장	·운홍빗물펌프장 면적 변경 - A=2,553㎡ → 2,221㎡ 감) 332㎡	·현황도로의 노선 신설에 따라 하수도 구역계 축소

3.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서구동 행정
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국, 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상기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수자원정책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의외 1필지 일원 면적 : 68㎡, (일시) 1,68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인도교 설치 ○ 시설개요 : 인도교 설치 (목교 철거) - L=16.2m, B=4.2m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1월 18일까지 (일시)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01월 1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수자원정책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의 1필지 일원 면적 : 1,251㎡, (일시) 1,68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수질정화 샛강 정비(물길산책로 조성) ○ 시설개요 : 물길산책로 조성 L=32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공 : 신설상수관로 L=43m, 신설취수관로 L=26m, 관정 1EA, 사각맨홀 1EA, 가물막이 L=10m - 배수공 : 집수정 3EA, 배수관 L=31m - 시설공 : 물길산책로 L=325m, 물길시점부 1식(10300×5000×H480), 물길종점부 1식(16000×5000×H680), 계단A~H 8개소, 징검돌 3개소, 디딤돌 126EA, 돌스탠드 및 징검다리A 1식, 돌스탠드 및 징검다리B 1식, 조경석혈기 및 쌓기(4단)L=2m, 계단블럭 1개소, 등의자 8EA, 종합안내판, 이용 및 주의 안내판 5EA, 하천점용안내판, 로프경계 재설치 L=70m, 화산석 재설치 A=131㎡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518㎡, 화강석판석포장 A=39㎡, 녹지경계석(직선) L=146m, 야자매트포장재포장 L=96m, 블라드재설치 2EA - 식재공 : 느티나무(이식) 등 4종 15주, 회양목 등 4종 1,553주, 무늬비비추 등 4종 2,660본, 잔디(줄떼) A=7,359㎡ - 부대공 : 공사설명판, E.G.I웬스, 워카등 - 전기공 : 후렉시블등, 블라드등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1월 1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체육진흥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5번지 외 6필지 일원→ (변경)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5번지 외 8필지 일원 면적 : (당초) 17,399㎡, 일시 514㎡ → (변경) 17,405㎡, 일시 4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안동(옥동)파크골프장 조성 ○ 변경사유 : 취수시설 추가 설치 ○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관 : PE(D50) L=596.8m, STS(D25) L=97.0m, - 취수시설 : 상수관로(D80) L=27.0m, 스프링클러(D25) 16개소, 관정(D1500, 5m) 1개소, 맨홀 1개소 등 - 오수관 : PE(D200) L=4.0m, 맨홀1개소 - 잔디식재 A=16,428.8㎡ - 마운딩(H500) 18홀, 네트(H1,000) L=1,216.8m - 이동식화장실(10.0m×2.7m×3.3m) 1개소, - 이동식사무실(9.0m×3.1m×4.0m) 1개소 - 수로정비 : 자연석쌓기 H=1.0~1.5 L=116.0m(양안) - 관로부 포장 : ASP포장 A=24.8㎡, CON'C포장 A=65.5㎡
점 용 기 간	2022년 08월 0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일시)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태호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진성로 108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51-4번지 면적 : 9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창고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 ○ 시설개요 : - ① 콘크리트포장(T=20cm) A=65㎡ - ② 다이크(H=0.2m) 설치 L=20.6m - ③ 복개 슬라브(B=1.1m) 설치 L=14m - ④ 우수집수정(600×600×1,050mm) 1개 설치 - ⑤ PE이중벽관(D200mm) 매설 L=8.0m - ⑥ 줄떼 식재 A=22㎡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1일부터 2030년 11월 20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783-1번지 외 9개소 일원 면적 : 1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수질측정망 설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관정 1식(10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21년 0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위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8 엘지헬로비전 1층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692-9 외 15필지 면적 : 6.7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CCTV회선용 통신주 설치 ○ 시설개요 : 통신주(IP 8m) 27본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1일부터 2030년 11월 20일까지



기 타

공 고

구미소방서 공고 경북(구미) 제2025-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관리업 신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내용]

- 상 호 : 주식회사 가람이엔지
- 대 표 자 : 김 정 희
- 영업소소재지 : 경북 구미시 인동북길 91, 211호(인의동, 이수빌딩)
- 업 종 : 소방시설관리업
- 등록번호(등록일): 제 경북(구미)-2025-0001호 (2025. 11. 20.) 끝.

2025. 11. 24.

구 미 소 방 서 장